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797

제안연월일 : 2006. 12. 21.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6년 3월 23일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3일 김한길 의원 외 14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4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9월 21일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62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2006. 12. 7)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되 이 인사청문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봄(안 제65조의2제3항 신설).

나.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 중 “또는 경찰청장”을 “ㆍ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②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신 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